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입양특례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 1)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본정책을 수립

하도록 함.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에서 제9조)

- 1) 법률 개정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사무국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구성·운영 현황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안 제10조)

-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될 아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됨을 규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

며, 그 후견업무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함
라. 임시양육결정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13조)

- 1) 법률 개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알리고 해당 아동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하는 등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함

마.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절차(안 제19조에서 제22조)

-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정보공개청구의 처리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정보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는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 현황이 포함된 기록의 사본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도록 정함

바. 업무의 위탁 구체화(안 제23조)

- 1)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인”이란 이 법(1976. 12. 31. 법률 제2977호에 따라 폐지된 「고아입양특례법」, 구 「입양특례법」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입양아동과 그 입양아동이 성장하여 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양당사자”란 제1호의 입양인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이 법에 따른 양부모 및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요건을 갖추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양당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입양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에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양당사자 또는 입양당사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인 입양당사자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수행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 업무의 지원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업무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후견인이 되기 전까지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의 후견인 역할 수행업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를 지시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미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각 목의 죄가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죄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범죄경력

3.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까지의 죄에 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를 위반한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까지의 죄에 따른 성인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 관련 범죄경력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아동의 생명 또는 건강상 중대한 사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시양육결정 아동의 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양육보조금 등은 입양아동의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①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부모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육 여부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 결정을 변경하여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18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19조(정보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의 사본으로 한다.

1.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2.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입양의 배경에 관한 사항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사항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및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입양 전 보호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입양정보의 공개의 신청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청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 또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19조제1호의 친생부모 인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정보만을 청구한 경우 : 15일 이내

2. 청구인이 제19조제1호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45일 이내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입양정보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 문서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제19조제1호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9조제1호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9조제1호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에 친생부모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2.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수용 기록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1의 시설 기준 등을 갖

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한 곳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복지서비스 지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각 지역별 입양대상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 및 영 제23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관한

사무

17.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8.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
21.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2. 법 제36조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사무
23.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확인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7호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로 한다.

[별표1] 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시설 기준 등 (제24조제1항 관련)

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시설 기준 등 (제24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을 갖출 것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

다만,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 인력 최소 2인 이상

나.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3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
-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시장·군수·구청장 이나 지정된 자로부터 인도요청을 받고서 1주일 이내에 인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이나 지정된 자로부터 인도요청을 받고서 1주일을 넘어 1개월 이내에 인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이나 지정된 자로부터 인도요청을 받고서 1개월을 넘어 인도한 경우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200	5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27